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4·3사건법 시행령)

[시행 2021. 6. 24.] [대통령령 제31802호, 2021. 6. 22., 전부개정]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8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의결사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단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4명
2. 제1호 외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3. 제주4·3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추가 진상조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2.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3.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발간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4. 그 밖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 나.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한다.
      -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 3)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 다.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
  2.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제1호가목의 서류
    - 나. 제1호나목의 서류
    - 다.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희생자의 친족 2명이 기재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유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희생자(수형인)·유족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수형인)·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제1호가목의 서류
    - 나. 제1호나목의 서류
    - 다. 제2호다목의 서류
  4. 희생자의 유족 신고만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제1호가목의 서류
    - 나. 제2호다목의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 ③ 실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제10조(심의·결정 등)** ④ 위원회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명부 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의결된 사람의 명부(名簿)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신고인이나 희생자의 친족이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할 때에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濟州4·3事件真相糾明및犠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는 행정안전부와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인용된 사람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재심의)**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향후 치료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희생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월 56만2천원

3. 보조장구 구입비: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사용가능기간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 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사용가능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사용가능기간을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③ 의료지원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6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
- 2.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을 3등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 행방불명 희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말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 2. 희생자 결정통지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추후 일정과 절차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하며,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을 할 때 추가로 입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실종선고가 청구된 행방불명 희생자의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9조(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이하 "치유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25조에 따른 재단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그 밖에 치유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치유사업을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수행하게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에 법 제25조에 따라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 1.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 2. 제주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
- 3.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4. 제주4·3사건의 추모사업
5. 제주4·3사건 관련 문화·학술사업
6. 그 밖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제21조(기탁금품의 접수방식 등)** ① 재단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접수했을 때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탁금품이 있는 경우
  - ④ 재단은 반기별(半期別) 기탁금품의 접수현황을 반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칙 <제31802호,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영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